



건축사는 기술자며

건

축사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한데 건축사는 그 중의 하나인 주생활에 관련된 일을 한다 하겠다.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하루종 상당시간을 건축물 속에서 보내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쓰는데 편리하고 꽤 적해야 한다.

가끔 건축계획이 잘못되어 쓰는데 불편한 집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건물 붕괴 등도 일어나 귀중한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는 수도 있다.

주생활이 이처럼 중요하므로 국가에서 소정의 자격과 전문지식을 가진자에게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 하겠다. 따라서 건축사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편리하며, 외관이 아름다우며 더 나아가 건축주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축사는 그 건물이 타건물이나 주위여건, 환경에도 잘 어울리도록 건축함으로써 하나의 거리, 더 나아가 하나의 도시를 여러면에서 조화있고 아름답게 꾸미는 데도 일조를 해야 한다. 만약 지금의 여의도 벤터에 초가집이나 한식 기와집을 지어놓는다면 기존 초현

대식 빌딩이 많이 빛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집은 농촌이나 관광지에나 어울릴 것이고, 고층빌딩은 여의도에나 어울릴 것이다.

오늘날의 파리가 있고 로마가 있어 그 자손들이 별 힘 들이지 않고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건축가들의 숨은 공로로 탓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건축사는 예술가일 수도 있는데 사실 서양에서는 건축사를 엔지니어가 아닌 예술가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이다.

한때 과기처에서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할 시 건축사도 도매금으로 거기에 포함시키려 했던 적이 있었으나 당시 건설부에서 기술자인 동시에 예술가인 건축사를 단순한 기술자 범주에 넣어 규제함은 타당치 못하다는 강력한 항의를 하여, 건축사만은 지금까지 고유한 건축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 자격시험 조건은 건축사법에 명시되어 있거니와 간단히 소개하면, 시험과목은 건축계획, 구조, 시공, 법규, 설계로 되어있고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으로 두 번에 걸쳐 시행되며 시험자격요건은 대학 건축공학과 졸업후 7년, 전문대졸후 9년, 고졸후 12년, 무학 16년의 건축관계 종사 경력이 요구된다.

건축사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며, 외관이 아름다우며 더 나아가 건축주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예술가

김 주 열〈점검 1부 대리〉

한국화재보험협회 근무경력도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건축사 사무소 개설조건도 규정되어 있다. 건축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사무실임차나 소유증빙서류, 건축사 자격증 사본, 사무보조원 명단등 소정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하고 건축사협회에 통보, 회원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건축물의 설계, 감리등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건축사 사무소의 형태는 단독 및 합동설계사무소가 있었으나 최근 건축사법이 일부 개정되어 합동이 없어지고 종합으로 되었다.

단독은 비교적 소규모 건축물만을 취급하게 되어있고 종합은 여러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내외 모든 건축물의 설계, 감리등의 업무를 취급토록 되어 있다.

화보협회출신 건축사로서는 S씨, B씨, O씨등이 현재 건축사 사무소를 영위하고 있으며 협회에 재직중인 건축사로는 본인을 포함해서 2명에 이른다.

앞으로 건축사가 되고자하는 직원을 위하여 몇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건축은 하나의 건물에 온갖 종류의 기술이 집약되어 유기적, 기능적으로 작용해야 하는 종합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첫째, 건축사는 모름지기 온갖 기술을 폭넓게 섭렵해야 한다.

둘째, 건축물에는 온갖 용도가 있게 마련이므로 각 용도에 따른 철저한 분석을 하여 건축주에게 편리하고 이익이 돌아가도록 연구를 해야한다.

셋째, 건축물은 아름다워야 하므로 예능방면에도 눈을 돌려 예술가적 심미안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넷째, 건축관계 제법규에 능통해야 한다. 여기서는 건축법은 물론이고 십여가지가 넘는 토지, 건물, 주택관계, 공법, 짐지어 오물, 전기, 통신, 상·하수도관계법과 등기법, 민법등등 수많은 법, 조례등을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계사무소를 영위코자 한다면, 경영수완이 필요하다. 사무소를 개설하고나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제발로 손님이 오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부단히 고객유치를 해야 한다. 치열한 경쟁은 어느 곳에도 있기 마련이지만 건축사 사회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한정된 국토에 수많은 건축사가 있으니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새집도 언젠가는 현집이 되고 그자리에 다시 새집이 서게 되고 그래서 건축사는 언제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기 우리나라는 아직도 새로 살아야 할 집과 집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